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85 발의연월일: 2024. 11. 1.

발 의 자:김병주・이기헌・추미애

윤후덕 · 김준혁 · 이언주

박선원 · 강준현 · 정성호

부승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 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,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음.

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 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2(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)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 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2조의2(대체복무요원의 분할
	복무)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
	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
	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
	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
	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
	은 통틀어 2년을 초과할 수 없
	다. 다만, 대체복무기관의 장이
	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
	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
	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
	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.
	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
	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